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I.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 ① 가입대상
- ②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 ③ 보험계약의 성립
- ④ 청약철회
- ⑤ 보험기간
- 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⑦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⑧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⑨ 분쟁, 합의, 관할법원

II.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 ⑩ 배상책임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 ⑪ 자기신체사고
-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⑬ 자기차량손해
-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 ⑮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⑯ 용어정의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공용 약관)

2007. 7.

III. 기타사항

- 17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 18 보험계약의 승계
- 19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 20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 21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22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23 기타사항

IV. 보험금 지급기준

- 24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25 대물배상 지급기준
-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 27 과실상계 등

자동차보험 약관 쉽게 찾는 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 | |
|-----------------|---------------------|
| 1 가입대상 | 7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 3 보험계약의 성립 |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4 청약철회 | 20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
| 5 보험기간 | 21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22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 | | |
|--------------------|---------------------|
|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 10 배상책임 | |

자동차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 | |
|--------------------|---------------------|
|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13 자기차량손해 |
|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11 자기신체사고 |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 | |
|--------------------|---------------------|
| 8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 13 자기차량손해 |
| 10 배상책임 |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 11 자기신체사고 |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I.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① 가입대상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한 개인
업무용자동차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②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6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용어정의 ⑰)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③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⑤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④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업무용의 경우는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4. 영업용자동차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외적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주) '05.2.22일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영업용 대인배상Ⅱ도 의무보험에 포함됩니다.

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계약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 ② 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 ③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④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⑤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 ⑥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

$$\begin{array}{|c|} \hline \text{납입할} \\ \text{보험료}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기 본} \\ \text{보험료}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특 약} \\ \text{요 율}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가입자} \\ \text{특성요율} \\ \text{(보험가입} \\ \text{경력요율} \pm \\ \text{교통법규위반} \\ \text{경력요율)}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특 별} \\ \text{요 율}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우량할인·} \\ \text{불량할증} \\ \text{요 율} \\ \hline \end{array}$$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상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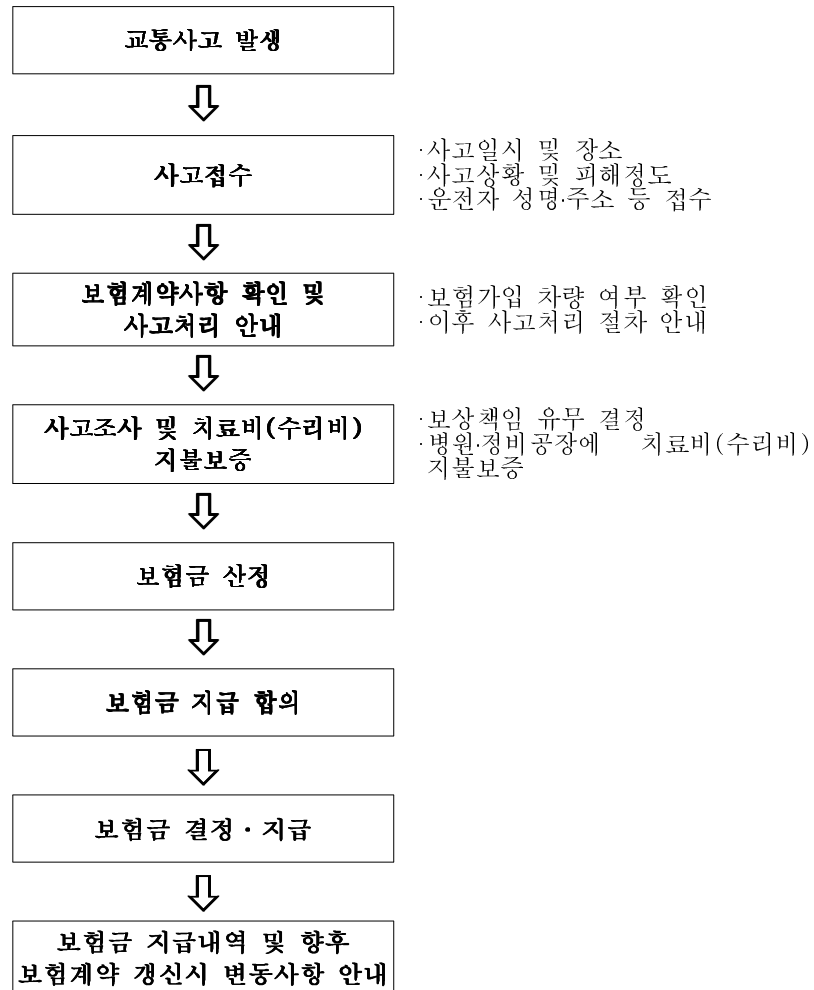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

Ⅷ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Ⅸ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II.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II 배상책임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대인배상 I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③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라고 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다만,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그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가 사업용(영업용)자동차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5) 위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용어정의②)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그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가 사업용(영업용)자동차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Ⅲ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자기신체사고보상액}} - \boxed{\text{공제액}}$$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boxed{\text{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boxed{\text{사망보험금}}$$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boxed{\text{사망보험금}} - \boxed{\text{후유장해보험금}}$$

③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된 경우

$$\boxed{\text{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애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boxed{\text{후유장해보험금}}$$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boxed{\text{공제액}} = \boxed{\text{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boxed{\text{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boxed{\text{실제 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㉒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㉒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범위' '(1)'의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 용	-	공제액
-------	---	--------------------	---	-----	---	-----

- ①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던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④ 위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⑤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위 ‘①’ 및 ‘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 (2) 위 ‘(1)’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3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⑦)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⑧)로 인한 손해
-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boxed{\text{지급 보험금}} = \boxed{\text{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정의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⑩)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5)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인배상Ⅱ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영업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⑩)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3)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영업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04년 8월 22일 이후 계약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⑮ 위 '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4) 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⑬)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⑨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영업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적용] ⑩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영업용 제외)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 행위로 생긴 손해 ⑦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기명피보험자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합니다. ⑫ 다음의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
(6) 자기차량손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영업용자동차보험만 적용]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⑦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⑧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구 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⑬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⑭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⑯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2.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대인배상 I ·II 및 대물배상	①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 I ·I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 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 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동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자기차량 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 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용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결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 ⑦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서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	○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⑥ 보험회사는 위 '④' 또는 '⑤' 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⑧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3) 제출서류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2) 보험회사는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용어정의

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

다.

②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실제 손해액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⑤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⑥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⑦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⑧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⑨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⑩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⑪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②)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⑫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⑬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정의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⑮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⑯ 대체폐차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⑰ 의무보험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I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I, 자배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담보하는 대인배상 II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

Ⅲ. 기타사항

17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18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18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18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바.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중 「1.(1)」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

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ㄱ)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㉔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중 '2.(1)' 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④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㉔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중 '1.(2)', '2.(1)' 또는 '㉔ 보험계약의 승계' 중 '1.(3)', '2.(3)'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5) 운휴 (영업용자동차보험만 적용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보험회사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 ③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와 피보험자동차의 명세를 보험회사에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Ⅷ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2) 위 ‘(1)’ 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 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3) 보험회사가 위 ‘(1)’ 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4) 보험회사가 위 ‘(1)’ 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용어정의㉔)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 (2) 위 ‘(1)’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간, 2종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 경·3종 승합자동차 간에, 또는 개인소유 1종·2종·3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종·2종·3종 승합자동차 간에 교체

(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사업용자동차로서 2종·3종화물자동차 간에, 또는 개인택시·개인 소유 1종·2종·3종·4종화물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 (5)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용어정의㉔)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Ⅸ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등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

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 'Ⅱ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Ⅱ 배상책임' 중 '1.(2)' 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의 대위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 ②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

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박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다.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하며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사업용(영업용)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 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㉔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 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㉑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㉒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한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㉓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IV. 보험금 지급기준

24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 레 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 자 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2) 사망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table><tr><td>청구권자 신 분</td><td>배우자</td><td>부 모</td><td>자 녀</td><td>형제자매</td><td>시부모· 장인장모</td></tr><tr><td>1인당</td><td>500</td><td>300</td><td>200</td><td>100</td><td>100</td></tr></table>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청구권자 신 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넛즈 계수를 곱하여 산정												

항 목	지 급 기 준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 하는 라이프넛즈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이 보험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 \text{연간수입액} - \text{주요경비} - (\text{연간수입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제세공과금} \} \times \text{노무기여율} \times \text{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동 비율 적용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율을 적용함

항 목	지 급 기 준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다) 기타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입증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항 목	지 급 기 준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

항 목	지 급 기 준
	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표1>에서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삭제> 마. 라이프닛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 <산식> — $\frac{1}{1+i} + \frac{1}{(1+i)^2} + \dots + \frac{1}{(1+i)^n}$ $i=5/12\%, n=\text{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 I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

항 목	지 급 기 준
	는 20,000,000원으로 함

나.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 I 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

항 목	지 급 기 준																																								
	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table><tr><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tr><td>1</td><td>200</td><td>5</td><td>75</td><td>9</td><td>25</td><td>13</td><td>15</td></tr><tr><td>2</td><td>176</td><td>6</td><td>50</td><td>10</td><td>20</td><td>14</td><td>15</td></tr><tr><td>3</td><td>152</td><td>7</td><td>40</td><td>11</td><td>20</td><td></td><td></td></tr><tr><td>4</td><td>128</td><td>8</td><td>30</td><td>12</td><td>15</td><td></td><td></td></tr></table>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0}{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항 목	지 급 기 준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기타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나.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해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 I 의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0,000원×장해율×70%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장해율×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정액</th></tr> </thead> <tbody> <tr> <td>50%미만 ~ 45%이상</td><td>400</td></tr> <tr> <td>45%미만 ~ 35%이상</td><td>240</td></tr> <tr> <td>35%미만 ~ 27%이상</td><td>200</td></tr> <tr> <td>27%미만 ~ 20%이상</td><td>160</td></tr> <tr> <td>20%미만 ~ 14%이상</td><td>120</td></tr> <tr> <td>14%미만 ~ 9%이상</td><td>100</td></tr> <tr> <td>9%미만 ~ 5%이상</td><td>80</td></tr> <tr> <td>5%미만</td><td>50</td></tr> </tbody> </table>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 ~ 45%이상	400	45%미만 ~ 35%이상	240	35%미만 ~ 27%이상	200	27%미만 ~ 20%이상	160	20%미만 ~ 14%이상	120	14%미만 ~ 9%이상	100	9%미만 ~ 5%이상	80	5%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 ~ 45%이상	400																		
45%미만 ~ 35%이상	240																		
35%미만 ~ 27%이상	200																		
27%미만 ~ 20%이상	160																		
20%미만 ~ 14%이상	120																		
14%미만 ~ 9%이상	100																		
9%미만 ~ 5%이상	80																		
5%미만	50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즈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항 목	지 급 기 준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즈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항 목	지 급 기 준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닛즈 계수 사망의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2005. 2. 21이전 사고 적용	2005. 2. 22이후 사고 적용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㉔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벤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 목	지 급 기 준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㉓ 과실상계 등

항 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함

<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100%
	무단동승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중	4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중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중	3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20%
	운전자의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중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중	2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중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 ~ 20%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급	1,500 만원	2,000 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피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 (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에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높이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2급	800만원	1,000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800만원	1,0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파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만 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파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척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파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900만원	1. 대퇴골 파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파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700만원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중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파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7급	400만원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 절 3. 상박골 상과부 골극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 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 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8급	180만원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도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 봉돌기, 오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 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 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 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 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 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 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9급	180만원	2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중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 조직(인대·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체불 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20만원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2급	60만원	8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60만원	8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60만원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급	8,000 만원	10,000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급 높지 않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급	7,200 만원	9,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	3.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

장애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급	6,400 만원	8,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4급	5,600 만원	7,0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 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
5급	4,800	6,0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장애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만원	만원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6급	4,000 만원	5,0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컷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 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 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10. “항상보호 또 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 간” 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 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 로 한다.
7급	3,200 만원	4,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제대로 못쓰 게 된 것” 이란 정상기능의 4 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 한 장해가 남 은 것이란 정 상 기능의 2분 의1 이상을 상 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 가 남은 것이 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 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 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 자(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하여는 ‘여자’ 를 ‘사람’ 으로 대체 적용)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2,400 만원	3,000 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 람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800 만원	2,25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500 만원	1,880 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000만원	1,25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 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 자(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하여 적용)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004.8.22일 이후 사고에 대 하여는 ‘여자’를 ‘사람’으 로 대체 적용)	
13급	800만원	1,000 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 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 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 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 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 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 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63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 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 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 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2004.8.21일 이전 사고에 한	

장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신 체 장 해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하여 적용)	

[개인용,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차]

I. 운전 가능자에 대한 제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하는 특약으로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가족 또는 부부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한정특약과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연령한정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일부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 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운전자 연령제한

- 1) 운전자 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2) 운전자 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3) 운전자 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4) 운전자 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5) 운전자 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6) 운전자 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7) 운전자 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운전자 범위제한

-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4)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영업용)
- 5)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6) 가족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7)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8)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 9) 자동차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II)

II.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확대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자기신체사고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보통약관에서 보장되는 내용 이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III. 긴급출동서비스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차량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애니카서비스 특별약관
2. 애니카라이프 특별약관

IV.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의 납입 방법과 결제수단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V. 기타 특별약관

이 특약에 선택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3.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4.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5.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6.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7. 공작용 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8.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9. 주차위반 피건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별약관
11.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12.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I.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운전자 연령제한

①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13]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4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13]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및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13]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및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4종 화물·경화물·3종승합·경승합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13]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및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⑤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4종화물·경화물·3종승합·경승합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13]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및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⑥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4종화물·경화물·3종승합·경승합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3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13]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및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4종화물·경화물·3종승합·경승합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및 ‘13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및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운전자 범위제한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4종화물·경화물·3종승합·경승합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13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부부 한정운전특별약관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4종화물·3종승합만 적용)

1. 보상내용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Ⅹ 배상책임', 'Ⅺ 자기신체사고', 'Ⅻ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4종화물·3종승합만 적용)

1. 보상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Ⅹ 배상책임', 'Ⅺ 자기신체사고', 'Ⅻ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④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영업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택시 및 개인소유 2종·3종·4종 화물·콜밴자동차로서 소유자를 보험증권 기재의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하고, 보험증권 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에 한정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는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Ⅱ 배상책임', 'Ⅲ 자기신체사고', 'Ⅳ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자동차의 양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Ⅷ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Ⅴ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가족** 이라 함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의 가족을 준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형제자매** 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및 형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Ⅱ 배상책임', 'Ⅲ 자기신체사고', 'Ⅳ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Ⅵ 가족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 그리고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기명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1인 운전자** 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추가 지정된 기명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Ⅹ 배상책임', 'Ⅺ 자기신체사고', 'Ⅻ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Ⅶ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와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기명1인 운전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1인 운전자** 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1인으로서 보험증권상에 기명된 운전자를 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추가 지정된 기명1인 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Ⅹ 배상책임', 'Ⅺ 자기신체사고', 'Ⅻ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Ⅷ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특별약관' 또는 '운전자(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에서 선택한 기간 동안 해당 운전자를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㉑ 자동차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 (II)

(업무용 자동차보험 적용)

1.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당해자동차의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10]배상책임의 피보험자로 간주하며, 보통약관 [11]자기신체사고, [12]무보험차에 의한 손해 및 [13]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자연령한정 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14]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일반면책사항 (1)대인배상I, (2)대인배상II, (3)대물배상, (4)자기신체사고, (5)무보험차에 의한 손해 및 (6)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손해
- ④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
- ⑤ 당해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인 경우 그 피용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1.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판매사원 포함), 자동차타공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II.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확대

Ⅰ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개인용 및 업무용 승용, 3종·경승합·4종·경화물만 적용)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Ⅱ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①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②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

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boxed{\text{공제액}} = \boxed{\text{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boxed{\text{자동차상해 보상액}} - \boxed{\text{실 제 손해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Ⅲ. 긴급출동 서비스

Ⅰ. 에니카서비스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에니카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에니카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에니카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에니카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구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등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③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바로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2) 긴급견인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의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급유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단,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6)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애니카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애니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자동해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애니카서비스를 5회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애니카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애니카라이프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 공통)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니카서비스

(가) 비상구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 발생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③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용어풀이 >

구난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이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자동차에 연결하여, 이동하기 바로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나) 긴급견인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의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위 '①' 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비상급유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단,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배터리 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바)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2) 애니케어서비스

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를 통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차량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별표>에 기재된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표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정비 이력 관리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등을 기록한 정비 이력 통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수리차량 운반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할 경우, 그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 한하여 수리후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보험자동차를 운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라이닝, 타이어, 워셔액, 부동액, 각종오일 등과 같은 단순 소모품만의 교체 또는 보충은 수리로 보지 아니하며,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km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라) 차량관리 예약대행서비스

① 등록대행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전,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등록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차량정비를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③ 검사대행 예약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④ 폐차대행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폐차대행 전문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폐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마) 실내세차 안내 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업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와 기타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가입 후 위 '2.(1) 에니카서비스'의 서비스를 5회 받았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동 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에니카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차량진단서비스 세부 항목

진 단 항 목			
기 본 서 비 스			
○ 엔진오일	○ 미션오일	○ 브레이크액	○ 파워오일
○ 클러치	○ 클러치실린더	○ 부동액(냉각수)	○ 라디에이터호수
○ 팬벨트	○ 타이밍벨트	○ 배터리	○ 얼터네이트충전
○ 스타트모터	○ 브레이크패드	○ 브레이크라이닝	○ 주차브레이크
○ 에어컨(히터)	○ 점화플러그	○ 플러그배선	○ 경음기
○ 와이퍼블레이드	○ 와셔액	○ 헤드램프, 안개등	○ 실내전구등
○ 브레이크등	○ 타이어공기압	○ 타이어마모	○ 소음기
○ 배기파이프	○ 예비타이어		
디젤차량 추가서비스		LPG차량 추가서비스	
○ 경유필터 점검 및 내부수분 제거		○ 기화기점검	○ 타르 제거
○ 엔진압축압력 점검		○ 가스유출여부 점검	

Ⅳ. 보험료 납입

Ⅰ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납입최고기간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적용]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개인용 및 업무용, 영업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적용]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6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 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위 ‘(1)’ 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공통)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3) 위 ‘(2)’ 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4.’ 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2) ‘(1)’ 에도 불구하고 11회납의 경우, 11회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서는 약정이체일로부터 1개월의 납입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약정이체일이 책임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보다 먼저 도래될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 (3)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 (5)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 속 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10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1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V. 기타 특별약관

Ⅰ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Ⅹ 배상책임(대인배상 I 제외)’ 및 ‘Ⅲ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Ⅲ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일반승용 및 다목적승용을 포함합니다.),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18 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의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적용)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8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 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내용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③ 보통약관 「5 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④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만 적용)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8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내용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Ⅱ」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③ 보통약관 「5 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④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승용자동차, 구급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2)의 ⑤’, ‘(3)의 ⑤’, ‘(4)의 ⑨’, ‘(5)의 ⑤’ 및 ‘(6)의 ⑤’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④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개인용자동차보험 적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적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⑤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귀하(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개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3.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책임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중도취득자동차
- ②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5. 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18 보험계약의 승계」의 「1.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 ②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7. 보험료의 정산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일할계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 (2) 위 「(1)」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합니다)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위 「(2)」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8. 특약의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 「6. 적용배제」의 제①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이 특별약관 「6. 적용배제」의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7. 보험료의 정산」의 「(2)」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⑥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지급(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합니다)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중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 반면책사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

구와 지급’ 규정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⑦ 도로주행시협용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한 자동차 중 도로주행시협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주행시협에 응시하는 사람이 도로주행시협을 위해 운전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⑦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적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비트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 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Ⅷ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 기재의 농경용자동차의 쟁기, 로우터리, 사이드로우터리, 타이어, 트레일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분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체(원동기 장착 부분)와 동시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Ⅸ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적용)

1. 적용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에 가입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1. 일반면책사항’의 ‘(3)’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합니

다)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견인개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1. 일반면책사항’ ‘(3)’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4.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2)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만 적용)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10 배상책임, 11 자기신체사고 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무보험자동차(용어정의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 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boxed{\text{비 용}} - \boxed{\text{공제액}}$$

- ① 위 ‘지급보험금’ 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비용’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위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그 배우자

(이하 “임차피보험자” 라 합니다)

나) 임차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임차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라) 위 ‘가)’ 내지 ‘다)’ 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가 아닌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다만,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라)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마) 위 ‘가)’ 내지 ‘라)’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 ‘(1)’ 각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Ⅱ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적용)

1. 적용대상

이 건설기계사업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6종 건설기계 및 일반

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 “대물 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Ⅳ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3)의 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대물배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Ⅳ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3)’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3) 보통약관 ‘[9] 분쟁, 합의, 관할법원’의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6.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3)의 [14]’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매설물을 파손하여 생긴 직접손해로 말미암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공사개시 전에 관련 기관에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3)’의 규정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주류, 담배와 그 제품,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9. 피보험자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0.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 (1)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3) 보통약관 ‘[9] 분쟁, 합의, 관할법원’ 의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 (4)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11.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운송중 위험 담보

“운송중 위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의 ‘1. 일반 면책사항’ 의 ‘(6)의 ⑬’ 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합니다.

1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중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5)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12)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1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4. 피보험자

운송중 위험담보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5. 비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16. 보상한도

-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 손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

“아웃리거 필수설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가 장착되어 출고된 건설기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용어풀이 >

아웃리거(OUTRIGGER)란 타이어식 기중기와 같이 끌어올리는 물체의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차체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장치로 지면과 밀착되는 다리로서 통상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동차가 아웃리거를 해당 건설기계 제작사 매뉴얼(그에 준하는 설치규정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작업이란 해당 건설기계가 도로은행 및 작업장내 이동을 위한 운행을 제외하고, 해당 건설기계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19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의 '2. 보험회사의 대위' 의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는 보통약관 '19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의 '2. 보험회사의 대위' 에서 언급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로 봅니다.

12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적용)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14]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의⑧, (3)의⑧, (4)의⑤, (5)의⑧, (6)의⑫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